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운영

# 2025 결산,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Online Library



# 2025 결산,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 K-IFRS 제 1118 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준비 점검

- 새로운 손익계산서 구조(영업·투자·재무 범주 구분)는 재무정보 산출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며, 성과관리, 보상체계, 재무 정보 시스템, 공시 등 여러 영역에 파급효과가 예상됨
- 조기적용 여부, 시스템·데이터·내부통제 영향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준비 수준 점검이 필수적임



## 회계부정·감사방해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품질 제고

- 회계부정 등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내부통제 미비점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평판 리스크가 증가함
- 자금부정 통제·부정 징후 탐지 프로세스·내부조사 절차를 재점검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업무 공조 수준을 강화해야 함



## 기업 공시 리스크 관리 및 품질 강화

- 자기주식, 교환사채, 임원 보상,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 등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함
- 공시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와 조직 역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변화 대응

- 이미 개정된 상법 조항(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 독립이사 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예정된 개정 사항(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역시 기업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시행시기와 경과 규정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며,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 금융회사: 책임·통제 기반 감독 강화

- 금융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요구와 시장의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책무구조도 모범·보완 필요 사례를 참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AI 사용에 대비해 AI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함

# Contents

<b>들어가며</b>	4
<b>01 재무보고</b>	
1. 2025년 재무제표 결산 시 특히 유의해야 할 회계처리는?	5
2. 손익계산서가 바뀝니다: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6
3. 회계부정 엄정 조치	7
<b>02 외부감사</b>	
1. 회계품질 개선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일관성 제고	9
2.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및 주기적 지정 유예	9
3.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 사례	11
4.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공시 확대	12
<b>03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b>	
1. 금융권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현황	13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의무 적용	14
3.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15
<b>04 공시</b>	
1.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17
2. 기업공시제도 개선	18
<b>05 거버넌스 환경 변화</b>	
1. 1·2차 상법 개정	19
2.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21
3.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22
<b>마치며</b>	24

# 들어가며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 개최, 2025. 11. 26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관련한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역할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분식·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당부사항이 제시되었다.

### 1. 감사품질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의 선정은 감사품질 확보의 출발점이므로 ‘감사비용’ 보다 ‘품질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

- 외부감사인 선정 시 독립성·전문성, 감사계획의 적정성, 투입시간의 충분성 등 감사품질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감사 과정에서 실제 투입 시간을 점검하여 선임 시 합의한 감사계획, 투입시간·인력 등이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평가해야 함

### 2. 외부감사인과 유기적으로 협력

복잡하고 교묘한 회계분식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계획·실시·종료 등 쉰 과정에서 내·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

- ‘경영진 배제’ 회의를 분기당 최소 1회 개최하되, ‘대면’ 회의를 통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
- 이를 통해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절차 실시, 핵심감사사항 선정·대응 등에 있어 빈틈없는 외부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와 연계되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감독

### 3. 내부통제시스템 감독 철저

내부회계 평가시 통제 설계뿐 아니라 현장의 통제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취약점 발견 시 시정 의견·결과를 이사회 등에 충실히 알려야 함

- 금년부터 자금 부정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의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므로, 관련 통제와 점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살펴야 함

### 4. 굳건한 독립성과 고도의 전문성 확보

경영진을 거치지 않는 독립된 정보체계와 외부감사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재무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증진

-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평가권·임면동의권과 직속 보고라인을 확보하여 내부감사기능의 실효적 작동 여건을 갖춰야 함

### 5. 회계부정 징후 포착 시 엄정하게 대응

회계부정 발견 시 자체 감사나 외부전문가 활용 조사를 통해 빠르게 시정하고, 필요시 조사·조치 결과를 증선위·감사인에 제출

- 내부감사기구는 조사의 쉰 단계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책임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

## 01 재무보고

### 1. 2025년 재무제표 결산 시 특히 유의해야 할 회계처리?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2025. 06. 23
- 한국공인회계사회, [보도자료] 2025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6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2025. 06. 24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2025. 12. 23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의 중점 점검 분야를 사전 예고한다. 기업과 감사인은 이를 통해 감독 당국의 점검 영역을 예측하고 사전 준비를 강화하여 회계 오류를 예방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상장회사와 일부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며, 그 외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 이슈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상장회사 및 일부 비상장회사)]

항목	내용	관련 기준서
투자자약정	주주, 채권자 등의 투자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유통업, 제조업)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	K-IFRS 제1036호(자산손상)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중점 심사 대상 회계 이슈는 최근 경제 이슈와 주요 지적 사례를 고려하고, 회계 및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다. 매년 6월에 예고한 중점 점검 항목에 대해, 다음 해 기업의 결산과 외부감사 종료 후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결과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되며, 심사에서 발견된 단순 회계오류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반복적 위반, 중대한 위

반의 경우 감리를 통해 중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음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하는 비상장회사의 2025년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대한 중점 점검 이슈이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점검 회계이슈(비상장회사)]**

항목	내용	관련 기준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li> <li>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 회계정책 수립</li> <li>매 보고기간 말 장기미회수 채권 손상검토</li> </ul>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여부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파악</li> <li>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 일치</li> <li>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을 모두 제거</li> </ul>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요건 검토</li> <li>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고려(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 등)</li> <li>이연법인세부채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li> </ul>	K-IFRS 제1012호(법인세) 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국외매출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조건 및 거래의 실질 등을 반영하여 수익인식</li> <li>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해외자회사 등과의 거래 주식공시 등)</li> </ul>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2. 손익계산서가 바뀝니다: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2025. 12. 18

손익계산서 내에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K-IFRS 제1118호 제정안이 공포되었다. 제정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익계산서 내에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
  - 1) **영업 범주**: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을 포함,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잔여 범주)
  - 2) **투자 범주**: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 발생 손익
  - 3) **재무 범주**: 자금조달부채 등 발생 손익
-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개념 신설
- IFRS 18의 수정 도입 - 손익계산서 본문에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하여 주석에 기재

[K-IFRS 제1118호 제정방향: 수정도입]

현행 회계기준(K-IFRS 제1001호)		新 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손익계산서	영업손익	영업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여 손익 (=경상손익 + 비경상손익)</li> <li>주요 예시: 자산 처분손익 등 일회성 손익 포함</li> </ul>
	영업외손익	투자 범주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관련자산 발생 손익</li> <li>주요 예시: 투자주식 평가손익</li> </ul>
		재무 범주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관련부채 발생 손익</li> <li>주요 예시: 회사채 발행수수료</li> </ul>
	수정도입 (계속 제공)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영업손익 정보 공시</li> <li>구체적 산정내역 및 IFRS 18 영업손익과 차이 내역</li> </ul>

3. 회계부정 엄정 조치

(1) 회계부정에 대한 금전 제재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2025. 08. 27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금전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은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시행령·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의 또는 장기간 지속된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양정 중요도를 높여 과징금을 증액</li> <li>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하거나 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li> <li>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의 개인 과징금 부과 한도를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li> <li>사후 수습(정정공시·피해 보상)으로 인한 감경은 과거 경영진에는 적용을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발생 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 제재</li> <li>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로 다수의 과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감사인 지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li> <li>대주주·경영진 전면 교체 후 과거 회계부정 신속 정정 및 재발방지 대책 이행 시 회사 과징금 최대 면제</li> </ul>

## (2) 분식회계 엄정 처벌을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정하게 처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03. 13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3월 즉시 시행되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최대 10억 원으로 규정해 법적 공백을 해소했다. 기존 법령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5배 벌금을 부과했으나, 부당이득이 없으면 징역만 가능해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 07. 18)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전	개정 후
<b>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b>	<b>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b>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_____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감사위원회는 제 개정된 회계기준이 재무보고에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어떤 절차를 통해 회계기준 제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추가적인 자원 또는 데이터 필요 여부를 식별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경영진이 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려는 경우 관련된 논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요구되는 재무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작성을 위해 내부통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질문>

- 경영진은 어떤 절차를 통해 제 개정된 회계기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및 도입하는가?
- 제 개정된 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해 회사에 보장되어야 할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는가?
- 새로운 회계기준 준수를 위해 기존의 시스템 및 통제들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가?
- (해당되는 경우) 경영진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조기 적용에 관한 결정을 평가 및 문서화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 방식(전진 적용 또는 소급 적용)을 적절하게 결정했는가?
-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경영진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데이터 및 프로세스에서 미비점이 식별되었는가?
-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인 제 개정된 회계기준을 어떻게 감사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 02 외부감사

### 1. 회계품질 개선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일관성 제고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5. 08. 03

금융감독원은 회계품질 개선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세칙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며, 등록감사인 관련 별지 서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현장조사시 권리보호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권리·의무 및 감리방해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li> <li>조사시 자료·진술서 목록 제공, 대리인 참여 허용 원칙 명문화</li> <li>합리적 사유 없는 조사 거부·출입 지연을 감리방해로 명시</li> </ul>
거짓자료 제출시 제재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을 가중 사유로 명확화</li> <li>자료 제출 거부·지연도 가중 사유에 포함</li> </ul>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경우를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로 규정</li> <li>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조치수준·합산기준·가중·감경 사유 등 신설</li> <li>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무제표 대리작성 시 독립성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li> </ul>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 제재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3년간 1단계 감경 및 과징금 10% 감경(1회 한정);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경 제외</li> </ul>
등록감사인 사후심리 자체 점검 기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보고서 사후심리 완료 후 자체점검 가능하도록 기간 합리화</li> </ul>

### 2.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및 주기적 지정 유예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케이티앤지, KB 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 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합니다, 2025. 09. 10

### 1. 주기적 지정제도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

자유선임 6년(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3년(사업연도)

### 2.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하는 제도

-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선정 시] 9년 자율 + 3년 지정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는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감사인 지정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초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어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신청 자격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 중 신외부감사법 시행(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았으며 최근 3년 내 결격 사유<sup>1</sup>가 없는 기업이다.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개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를 의결했다.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명	선정 사유
케이티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내부감사조직(지원조직)</li> <li>• 밸류업 우수표창, 지배구조 우수등급, 회계의날 포상(가점)</li> <li>• 적극적 자회사 관리(자체 노력) 등</li> </ul>
KB금융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감사기능 독립성)</li> <li>• 밸류업 우수표창, 지배구조 우수등급(가점)</li> <li>• 감사위원회, 자체감시 활동 우수, 활발(자체 노력) 등</li> </ul>
현대차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li> <li>•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자체 노력)</li> <li>•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가점) 등</li> </ul>

<sup>1</sup> 결격사유는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나 기소·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감사의견비적정,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 등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로, 무죄 판결이나 경미한 위반은 예외로 인정된다.

**[참고] YouTube 영상**

- 삼일 PwC 거버넌스센터 세미나 – 감사인 지정 유예제도, 규제를 넘어 기회로

**3.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 사례**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보도자료] FY2025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 협의회 사례, 2025. 12. 31
- CPA 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당기 협의회 사례 57 건 공개, 2026. 01. 12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개최된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안건 중 일부를 공개했다. 주기적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감사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 간 회계처리나 감사 의견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각 안건을 △관련 회계기준 △색인어 △개괄적인 사실관계 △쟁점 사항 △해설 및 시사점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전·당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대부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복잡한 회계 이슈들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내용이 특정 안건에서 제시된 조건과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중요 사항의 누락 변경 등으로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향후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IASB, IFRSIC 등의 질의회신이나 기준 개정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자료를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분류	주제	분류	주제
공정가치	유·무형자산 분할대가 할인율	연결	업무집행조합원 연결 여부
	KOTC 주식 공정가치		과반 미만 지배력 판단
	전환상환우선주 평가(비상장 FV)		해제 가능한 위임 의결권
	매각예정부동산 FV		위임약정 지배력 판단
	전환상환우선주 희석 반영, 상환가능재원		50% 미만 지배력 판단
	전환사채 콜옵션 FV		분양공사 진행률(연결)
농림어업	수목 분류	사업결합	사업결합 해당 여부
금융상품	전환사채 FV-발행가 차이(Day1)	지분법	관계기업 전환사채 회계정책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원자재 판매 본인-대리인
	투자 전환사채 Day1 판단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본인-대리인
	대여금 최초 할인율		고객 매입 원재료 수익 인식
	대여금 기대신용손실 할인율		해외 판매법인 매출 본인 여부
	전환사채 상각기간(기대 vs 계약)		라이브커머스 본인-대리인
손상	별도-종속기업 FV 외 평가	수익인식	유상사급 총액 순액 판단
	무형자산 손상		로열티 수익 차감 여부
	관계기업 투자 손상 환입		설계용역 본인-대리인

	투자부동산 손상 환입		해외 원천징수 VAT 기간귀속
법인세	종속기업 투자주식 DTL		사후 제공 용역 수행의무
	관계기업 투자주식 DTL 세율		라이선스·R&D 수익인식
	이연법인세자산 자산성		장비매출 집행가능청구권
투자부동산	담보 제공 건물 일부 분류	오류/추정	재고충당률 변경 오류 여부
	임대 중 건물 분류	수익인식(G)	제품, 원재료 매입거래 본인대리인
	자가사용 vs 투자부동산	재고(G)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

#### 4.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공시 확대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공시가 확대됩니다. 2025. 12. 16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지사항]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내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대한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공시 서식 관련 FAQ 배포, 2026. 01. 13

24년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되어, '26년 1월1일부터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더라도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컨설팅 법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을 체결하기 전에 독립성 준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개정 전	개정 후
통제와 소유 또는 경영의 통일성에 있어 당해 회계법인이 그 회계법인의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나 경제적 실체	<p>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대규모 조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익공유 또는 비용부담</li> <li>② 공동의 소유와 통제 또는 경영 공유</li> <li>③ 공통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 공유</li> <li>④ 공통의 사업전략 공유</li> <li>⑤ 공통의 브랜드 명칭을 공유</li> <li>⑥ 전문자원 중 상당 부분을 공유</li> </ol>

- 기업이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모든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을 공시
- 국내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계약 모두 포함. 종속기업과 네트워크 회계법인 간 계약은 공시 제외, 회사의 지점·사무소 관련 계약은 공시 포함
- 첫해(2026년)에는 개정 윤리기준(2025.1.1 시행)에 따라 당기에 수행된 비감사용역을 기재하며, 전기·전전기 종료된 업무는 제외. 단, 전기 또는 전전기부터 당기까지 계속된 업무는 종전 기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

출처: 금융감독원,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공시 서식 관련 FAQ

##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기말 시점에 이르면,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의 수행과 완료 감독, 외부감사인과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및 감사인의 독립성과 업무 품질 확인 등에 집중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질문>

- 효과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인원으로 감사팀이 구성되었는가?
- 경영진은 외부감사팀 및 그들의 감사품질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외부감사인이 올해 예상하는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 영역은 무엇이며, 어떤 면에서 감사인의 유의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가?
- 회계처리감사재무보고 등과 관련하여 경영진과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외부감사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를 조율하는가?
- AI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외부감사인의 계획은 어떠한가? 추가적인 인사이트 및 한계 또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하는가?
-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 과정 전반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협력 수준은 어떠한가?

## 03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 1. 금융권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현황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2025. 05. 26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2025. 12. 21

2024년 7월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및 은행 등 40개사에 대해 운영 실태를 서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업권별·회사별 편차를 줄이고,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분	사례	상세
모범사례	제재운영지침 반영	• 내부통제 위반 제보·신고 관리체계 점검 항목에 금감원 제재운영지침을 선제 반영 • '상당한 주의' 관점에서 대표이사 총괄 관리조치 사유를 확대

	<b>KPI에 반영</b>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금융사고 예방 및 불건전 영업 방지 요소 반영, 행동·문화차원의 통제 강화
	<b>비재무지표 활용</b>	이상징후 점검 시 재무지표 외에 비재무지표를 병행하여 탐지력 고도화
	<b>사고 시뮬레이션</b>	과거 대형 금융사고 사실관계 기반 '책무구조도 시뮬레이션' 수행
	<b>정보 공유 체계</b>	검사 및 준법, 현업부서간 금융사고 관련 정보 공유로 재발 방지
<b>보완 필요 사례</b>	<b>임원 '셀프점검'</b>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를 임원에게 위임. 임원이 자기 업무를 스스로 점검하는 이해상충 발생
	<b>책임 전가 소지</b>	총괄 관리의무 일부를 책무기술서에 기재하는 등 위임 근거 불명확, 사고 시 임원에게 책임 전가 위험
	<b>책임과 역할 혼재</b>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 개별 관리의무가 구분 불명확하여 중복 수행, 책임소재 불분명
	<b>위험관리 정책 미비</b>	전사적 위험관리 관점의 총괄 관리조치 이행 체계 미흡
	<b>형식적 통제</b>	동일·유사업무 장기 수행 방지조치를 체크리스트식으로 이행, 실효성 검토 부족
	<b>이사회, 위원회 운영</b>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의 형식화, 보고가 단순 나열식
	<b>전사적 RM 체계</b>	전사적 위험관리 정책의 집행·점검 체계 미흡

##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의무 적용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024. 11. 11

기존 상장회사협의회회의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은 2023년 말 외부감사규정<sup>2</sup>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해당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며, 비상장중소기업은 면제된다.

운영실태보고서에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보고서의 내용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기타사항' 문단에 기재해야 한다.

### [자금부정 통제 공시 개요]

구분	설명
도입 배경	회사가 부정위험에 대한 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

<sup>2</sup>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 2 별표6

대상 회사	상장회사, <b>대형 비상장회사</b> (「외부감사법」 §8①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공시 시기*	'25 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관련 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6>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b>기준</b> 」 제 25 호 차목 및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b>가이드라인</b> 」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 3.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RMF)」 도입, 2026. 01. 01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혁신과 책임의 균형 하에 건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이하 'AIRMF)」를 마련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시했다.

2025년 4월, 국내 금융회사 118개사(은행 20곳, 카드사 8곳, 증권사 37곳, 보험사 53곳)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수의 회사만이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위험관리·내부통제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 5곳(25%), 보험사 4곳(7.5%), 증권사 1곳(2.7%)만이 AI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상태이며, 약 85%의 금융회사는 AI 윤리 원칙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I 서비스 개발·활용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제시한 AI 관련 가이드라인<sup>3</sup>을 적용한 비율도 약 60%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이행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AI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희망해 왔다.

#### [금융분야 AIRMF의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금융권에 AIRMF(안)을 배포하고,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26년 1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b>목표</b>	AI 시스템의 도입·활용 전주기에 걸친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	
<b>구성 및 주요 내용</b>	“금융분야 AI 7대 원칙” 준수를 위한 기본요소를 평가 항목 등에 반영	
<b>1. 거버넌스</b>	<b>의사결정기구</b>	AI 위험 관리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 AI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b>위험관리 전담조직</b>	AI 기획·개발 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AI 업무 전반을 통제·관리
	<b>내규 및 지침</b>	AI 윤리기준을 근간으로 위험관리규정 및 지침 등 내규를 수립하고, 업무매뉴얼을 마련

<sup>3</sup>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회사가 AI를 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①운영 가이드라인(21.7) ②개발·활용 안내서(22.8) ③보안 가이드라인(23.4) 등을 제공해 왔다.

2. 위험평가	위험 인식측정	사전 설정된 위험평가 항목별로 개발/활용할 SI 시스템의 위험을 인식/측정
	위험 경감	항목별 사전 정의된 위험경감 방안에 따라 경감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잔여 위험 산정
	잔여위험 평가	항목별 잔여위험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잔여위험을 최종 평가
	위험등급 산정	잔여 위험점수를 합산하여 사전 분류기준에 따라 SI 서비스의 위험등급을 결정
3. 위험통제	통제관리 차등화	SI 서비스의 위험등급에 따라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차등화(고/중/저)된 통제 관리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전 설정된 모니터링 항목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수행 및 미흡사항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문서화 및 교육	위험평가/통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책임과 역할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
	감독당국 정보공유	감독당국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위험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감사위원회는 기업이 직면한 많은 새로운 리스크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역동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 특성상, 감사위원회가 리스크 감독에 있어 선제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리스크 환경을 이해하고, 회사의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가 견고하고 전략적인지, 기업의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지,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감사위원회가 모든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는 없지만, 발현 조짐을 보이는 주요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질문>

- 경영진은 어떤 절차를 통해 신규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 관리 책임을 배분하는가?
- 경영진은 전략 수립 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반영하며, 회사의 리스크 성향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 경영진은 핵심 프로세스 및 통제를 전략 및 리스크와 어떻게 연계하는가?
- 핵심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며, 그러한 전략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 경영진은 리스크의 식별/모니터링/측정/완화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는가?
- 감사위원들의 역량과 감사위원회의 감독 책임이 연계되어 있는가?
- 내부감사 계획은 빠른 속도로 생겨나는 신규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 외부감사인인 회사의 전사적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동종업계의 모범 관행 대비 어떻게 평가하는가?

## 04 공시

## 1.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 (1)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 개선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내용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가 개선됩니다. 2025. 10. 1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최근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을 늘리면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서식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0일부터 즉시 시행되었다.

####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추이\*]

(단위: 건, 억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2025년 3분기(9월)
발행건수	25	28	17	50(39)
발행금액	32,237**	9,863	9,997	14,455(11,891)

\* 최종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일 및 내용 기준(태광산업 발행예정금액 3,186억 원이 9월 현황에 포함되었으며 이하 같음)

\*\* SK하이닉스(224조 원 포함)

이에 따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주요사항 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다음의 핵심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1. 타자금조달 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2.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3. 실제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5. 발행 이후 등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 협약 내용 포함)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

### (2)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 계획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2025. 12. 23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5. 09. 25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활용 투명성 제고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함께 적용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시 대상 자기주식 보유 기준을 발행주식총수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확대
- 공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상향  
: 반기보고서 제출 시에도 이사회가 승인한 자기주식보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 시간외 대량매매로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를 충실히 공시
- 취득·처분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비교 공시: 30% 이상 차이 발생 시 사유 기재
- 반복적인 공시 위반 시 임원 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등 가중 제재 도입

## 2. 기업공시제도 개선

<p><b>[출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의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2025. 11. 17</li> <li>•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2026. 01. 09</li> </ul>
--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공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내외 투자자와 일반 주주들의 상장기업 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시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개정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항목	내용			
<b>영문공시 확대</b>	<b>• 영문공시의무화</b>			
	<b>구분</b>	<b>현행</b>	<b>2단계 확대</b>	<b>3단계 확대(예정)</b>
	<b>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10조 원 이상 &amp; 외국인 지분율 5% 이상</li> <li>또는</li> <li>• 자산 2조 원 이상 &amp;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li> <li>• 코스닥 시장 대형(예: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li> </ul>
<b>시기</b>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부터 (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2026년 3월 1일 시행)	2027년 3월부터 * 2025년 11월 발표한 2028년에서 앞당김	
<b>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공시 중 지배구조/조직 개편, 결산, 증권발행 등 주요경영사항의 일부 26개 항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 (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li> </ul>	좌동	

	<b>기한</b>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 일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10조 원 이상: 국문 공시 제출 당일(원칙<sup>4</sup>)</li> <li>• 자산 2조 원 이상: 좌동</li> </ul>
<b>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지원 인프라 강화 예정 (2026년 1월) 영문 DART 구축, 영문공시 우수법인 수상기업 수 확대(3 → 5사) (2026년 4월) 거래소 AI 번역지원서비스 고도화, 번역 지원 대상기업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배포 (2028년 1월) XBRL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li> </ul>	
<b>임원보수 공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3월부터 의안별 찬·반·기권 비율 공시 의무화: <b>당일 거래소 공시 및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공시</b></li> <li>• <b>2026. 03. 01 이후 개최한 주주총회부터 적용</b></li> <li>• 임원 전체 보수총액, 개인별 보수에서 주식 기준보상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도 병기)</li> <li>•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과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나 그 래프로 기재</li> <li>• <b>2026년 반기 보고서부터 적용</b></li> </ul>	

##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감사위원회는 공시 제도 전반의 변화가 회사의 정보 제공 방식,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규제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자기주식 공시, 교환사채 발행 관련 정보 제공, 기업공시 제도 개선(영문공시, 표결결과 공시, 임원보수 공시 강화 등)과 같이 공시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는 환경에서, 공시의 정확성·적시성뿐 아니라 공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와 통제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질문>

- 경영진은 새로운 공시 의무(자기주식, 교환사채, 영문공시 확대 등)를 어떻게 파악하고 내부 절차에 반영했는가?
- 공시 담당 조직은 충분한 전문성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시 오류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자기주식 관련 공시에서 지배구조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예: 교환사채 발행 시 의결권 희석 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가?
- 영문공시 의무 확대에 대비해 번역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외부 검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임원보수 공시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보상위원회 등의 역할이 강화된 부분이 있는가?

## 05 거버넌스 환경 변화

### 1.1·2차 상법 개정

<sup>4</sup> 국문공시가 오후에 제출될 경우 다음 날(영업일) 오전까지,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일부터 3영업일 이내

**[출처]**

•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에 대응, 2025. 08. 25

지난해 여름, 1차, 2차 상법 개정안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골자로 하며, 2차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1차 개정, 2025. 07. 22 공포]**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시행시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b>회사와 주주</b>로 확대</li> <li>• 이사는 직무 수행함에 있어 <b>총주주의 이익을 보호</b>해야 하고 <b>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b>해야 함</li> </ul>	모든 회사	2025년 7월 22일 시행
전자주주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상장회사는 전자주총 개최 가능</li> <li>• <b>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총 개최 의무</b></li> <li>• <b>Offline-online 병행</b> 개최 방식으로만 가능(전자주총 Only는 불가)</li> </ul>	상장회사	2027년 1월 1일 시행
감사선임 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의결권 위임 주식 합산하여 3%의결권 제한 적용(<b>사외이사 여부 불문</b>)</li> </ul>	상장회사	2026년 7월 23일 시행
독립이사선임 비율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을 <b>독립이사</b>로 변경</li> <li>•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 수행</li> <li>• 일반상장회사 사외이사 선임 비율이 1/4에서 독립이사 <b>1/3 이상</b>으로 증가</li> </ul>	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 코스닥 벤처기업 등 제외)	2026년 7월 23일 시행

[2차 개정, 2025. 09. 09 공포]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시행시기
집중투표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함</li> <li>• 반면 대규모 상장회사는 배제 불가능</li> <li>• 1% 이상 주주가 요구하면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출</li> <li>• 2대주주 등이 추천하는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 높아짐</li> </ul>	대규모 상장회사	시행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1%)의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li> <li>• 정관으로 3명 이상으로 규정 가능</li> <li>• 2대주주 등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출될 가능성 높아짐</li> </ul>	대규모 상장회사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2.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상법 개정안-자기주식 소각, 2025. 11. 2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를 도입했으며, 기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받아야 하며, 해당 계획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권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교환·상환 목적의 사채 발행 및 질권 설정도 제한된다.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기주식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되,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의무에 대해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Viewpoint**

-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공포 즉시 예정)로부터 “원칙” 1년 + “추가” 6개월의 처분 가능 기간 내에 ① 소각 또는 ②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 보유한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과 수량, 보유 예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각 여부에 대한 결정 후 각 시나리오에 따른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

- 자기주식 보유·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관 개정 필요 여부 검토 필요(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유 및 처분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부결 시, 1년 내 원칙적 소각이 적용되므로 충분한 주주 커뮤니케이션 필요
-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기주식 활용이 제한되므로 새로운 전략 설정 필요

### 3.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025. 07. 09
- 한국거래소, 2026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작성기준, 2026. 01. 08
-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5.12 개정), 2026. 01. 08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초로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미만 기업은 공시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시항목의 오기재나 누락이 발생하면 거래소가 정정공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하거나 허위 공시를 한 경우 및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최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25.12) 주요 내용

- 핵심지표 4 주식 삭제: '공시대상 기간 중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삭제, 2025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뿐만 아니라 2026 회계연도에 대한 분기배당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핵심지표 준수 여부 판단
- 세부원칙 1-2: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항목 신설
- 세부원칙 1-4: '주주에 연 1 회 통지 여부' 대상에 주주환원정책 관련 실시계획 추가
- 세부원칙 10-2: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에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 및 참석자 정보를 포함

한편, 한국거래소는 2026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점검사항은 핵심지표 4개와 세부원칙 5개,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중요사항 누락이나 오류 발견 시에도 점검 후 조치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세부원칙 관련 사항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의 기재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미준수 시 사유와 향후 계획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sup>5</sup> (제재수단) 1.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10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15점 이상) 등의 후속조치 가능)

중점점검사항		주요 점검내용	중점점검사항 작성 기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핵심지표 ①, 세부원칙 1-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제출 직전 정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소집공고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지 기재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집결의일이 아닌 소집공고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28일 이상인 경우에만 핵심지표 준수로 인정</li> <li>• 보고서 제출 직전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작성</li> </ul>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핵심지표 ③, 세부원칙 1-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 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제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했는지 기재 여부</li> <li>•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나 아닌 날로 정관 개정했는지 기재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AND 실제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핵심지표 준수로 인정</li> <li>• 보고서 제출 직전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작성</li> </ul>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핵심지표 ④, 세부원칙 1-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기준일 관련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정관 개정했는지 여부 및 실제 현금배당 시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관련 기재 여부(분기배당 실시 기업은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배당 시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금 확정(또는 공시) 여부 기재</li> <li>• 분기배당 기업은 분기배당에 대한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및 정관 개정 여부 포함하여 기재</li> </ul>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	세부원칙 2-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분할 등 추진 시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주주보호정책 기재 여부</li> <li>• 공시 대상기간 중 합병·분할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주주보호정책에 따라 시행한 사항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주주 의견 수렴 절차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 등을 명문화된 주주보호정책 기재</li> </ul>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분기별 회의 개최	핵심지표 ⑭, 세부원칙 10-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회의가 분기별 1회 이상 대면으로 진행되었는지 기재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1~4분기 분기별 회의 진행 여부 기재</li> <li>• 회의는 서면이 아닌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어야 함</li> <li>• 경영진 및 감사대상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 참석 시 불인정</li> </ul>

##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가 이사회 운영, 주주권 보호, 자기주식 관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므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질문>

- 경영진과 이사회는 최근 상법 개정(3%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적용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 자기주식 소각 의무(3차 개정안)에 대비해 보유 목적처분 계획정관 정비 등 필요한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었는가?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확대(2026년) 관련 보고서 작성 책임자 및 검토 절차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는가?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내부 통제와 검증 프로세스가 충분한가?
- 이사회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 경영진은 기업지배구조 환경 변화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 외부감사인 또는 내부감사는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동종 업계 대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 마치며

2025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들은 회계처리, 외부감사, 내부통제, 공시, 지배구조 등 전방위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K-IFRS 제 1118 호에 따른 재무제표 개편,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 자기주식을 포함한 기업 공시 정보의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환경 변화 등은 모두 기업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감사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감사위원회는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기업의 비즈니스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영진의 적절한 대응을 감독해야 한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법규 준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체크포인트와 질문들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독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Contact

- 02-709-0709
- kr\_sgc@pwc.com